

제2015 - 7호

## 경 고 장

### 기 관 경 고

기관명 : 경상남도 남해군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8조, 제42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·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과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하고,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런데 귀 기관에서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는 인사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음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승진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사전 내정된 승진대상자 명단을 공지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심의 · 의결 하였다.

그 결과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인사행정의 공정성이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위 사실과 관련하여 귀 기관을 염중 「경고」 하오니 향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.

2015. 12. 17.

행 정 자 치 부 장

